

보도시점 (지 면) 3. 11.(월) 조간
(인터넷) 3. 10.(일) 12:00

이제 중소기업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3.18일부터 신청접수, 3.29일부터 이자환급 -

- ▶ 중소기업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 ▶ 신청 경로(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경로(채널)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소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경로(채널)	현실공간 (오프라인) 경로(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전화상담실(콜센터)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	거래 금융기관 방문

- ▶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화상담실(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 ※ 전화상담실(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 02-3211-5619, 5621, 5622

1. 그동안의 경과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기업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이에 따라 중소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기업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습니다.

* 중소기업권 금융기관(약 3,6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월~), 차주 신청시스템 구축(3.18일 개시 예정)

[중소기업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 지난 2.1일 발표되었던 보도자료(“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주요내용

①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기업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②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적용례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③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적용례: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2.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3.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 [붙임1] “표준문구” 참고)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i)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ii)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 카드명세서, 카드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인 “캐시노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3.13일부터 게시 예정)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경로(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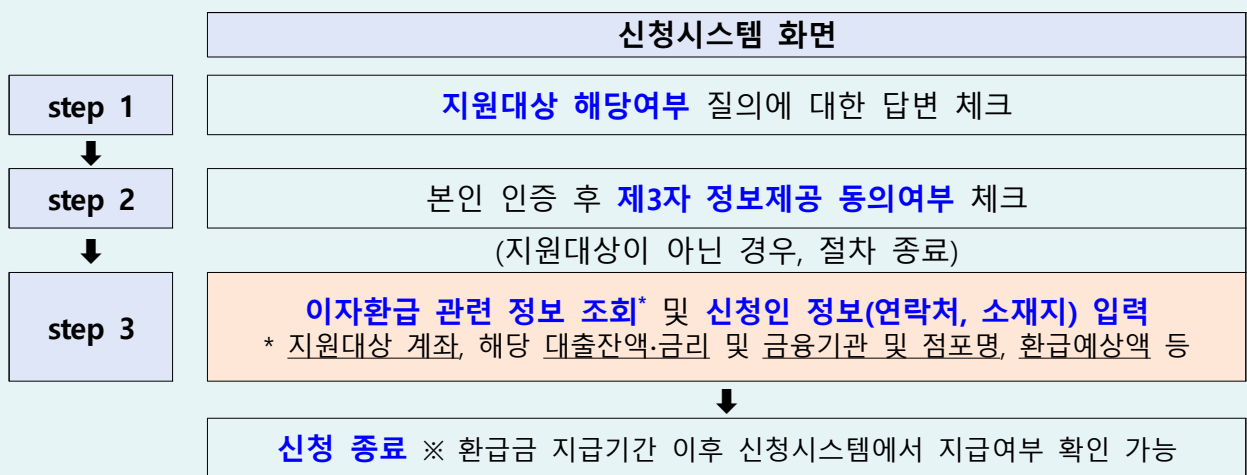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경로(채널)	현실공간 (오프라인) 경로(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전화상담실 (콜센터)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외(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① 신분증	① 신분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 **5부제 실시 일정** (해당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일자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일)	3.25(월)
해당 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신청시스템 사용례 (☞ [붙임2]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참고)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경로(채널)가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 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23.12.31일 기준)

3.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i)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ii)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iii)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 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

구 분	지원대상 계좌		지원대상 아님
	에이(A)계좌(금리 6%)	비(B)계좌(금리 6.5%)	씨(C)계좌(금리 8%)
대출계약 시기	'22.9월	'23.5월	'23.1월
이자납입 기간	1년 6개월	10개월	1년 2개월
개별 환급가능 분기	'24.1분기	'24.2분기	-
최종 환급가능 분기	'24.2분기		-

4. 민원 제기

민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전화상담실(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18일(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02-3211-5619, 5621, 5622)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전화상담실(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3.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강신천 (044-204-7520)
		담당자	사무관	박 현 (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2-2100-2993)

관계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책임자	이 사	김문환 (055-751-9401)
		담당자	부 장	송승훈 (02-3211-5620)
	한국신용정보원	책임자	상 무	방태진 (02-3705-5806)
		담당자	부 장	이병철 (02-3705-5917)
	저축은행중앙회 경영전략본부	책임자	수석사무	최병주 (02-397-8602)
		담당자	부 장	하태원 (02-397-8650)
	여신금융협회 금융본부	책임자	본부장	이효택 (02-2011-0724)
		담당자	부 장	백승범 (02-2011-0619)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	책임자	본부장	김민기 (02-2011-0711)
		담당자	부 장	김효석 (02-2011-0743)
	농협중앙회 사업지원본부	책임자	상 무	장종환 (02-2080-5076)
		담당자	팀 장	임남수 (02-2080-3131)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	책임자	본부장	이옥진 (02-2240-2200)
		담당자	단 장	이강식 (02-2240-3201)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	책임자	본부장	조용록 (042-720-1860)
		담당자	팀 장	한동권 (042-720-1871)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	책임자	부 장	조현철 (02-3434-7230)
		담당자	팀 장	이현승 (02-3434-7231)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문	책임자	상 무	이종성 (02-2145-9120)
		담당자	부 장	박광복 (02-2145-9481)



“○○ 저축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1년 이상 납입하신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기업권 금융기관(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예외: 주업종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또는 금융업 등)

고객님께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 저축은행 홈페이지** 또는 **아래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정 및 신청절차 등 이자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www.fsc.go.kr, 링크 클릭 불가)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링크 클릭 불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링크 클릭 불가)

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링크 클릭 불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운영이 시작되는 3.18일 전까지는 02-3211-5619, 5621, 56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꼭 유의하세요!

① 웹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접속



② 지원대상 해당여부 자가점검

※ 온라인 신청의 경우, 3.18~25일까지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로 운영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4(토)	3.25(일)	3.26(월)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지원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자가점검을 통해 본인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볼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에 모두 예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조회가 가능합니다

NO	문항	예	아니오
1	(23.12.31일 기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십니까? ※ 개인사업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내방(오프라인)을 통해 캐시백 신청 가능합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23.12.31일 기준) 개인사업자로서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있습니까? ※ 제2금융권 :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23.12.31일 기준)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입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보유하신 대출 종류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십니까? ※ 지원대상이 아닌 대출 종류: 개인대출, 주식담보대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주민등록번호 끝자리(13번째 자리)가 3 혹은 8입니까? ※ 초기 신청량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께서는 아래 운영방식을 참고하시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맞는 신청가능한 날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일)	3.25(월)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돌아가기

신청/조회 계속

신청/조회 계속

③ 정보제공동의 및 본인인증

동의 및 본인인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이자환급·이자환수에 대한
동의 내용을 읽고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전체 보기

이자환급·이자환수에 대한 동의 전체 보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다음

④ 이자환급정보 조회 (금융기관도 동일한 내용 조회 가능)

※ 이자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자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리고 종료

캐시백 통합내역 조회

홍길동 님의 실제지급액은 총 '**1,150,000원**' 입니다

홍길동 님의 지급예상액은 총 '**1,150,000원**' 입니다

※ 유의사항 안내
- 예상지급액은 현재 확인된 대출정보를 통해 단순 산정한 금액으로서 지급액 경토과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캐시백 지급은 원리금자동이체가 설정되어있는 대출거래기관의 차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1. 대출정보 및 지급정보

점포코드	계좌번호	대출정보			지급정보		
		금리	대출잔액	이자1년 납입여부	예상지급액	실제지급액	지급일자
현대캐피탈	000000-000000	6.5%	50,000,000	충족	750,000	750,000	2024.3.28
현대캐피탈	000000-000000	6%	30,000,000	충족	300,000	300,000	2024.3.28
농협	000000-000000	5.5%	40,000,000	충족	100,000	100,000	2024.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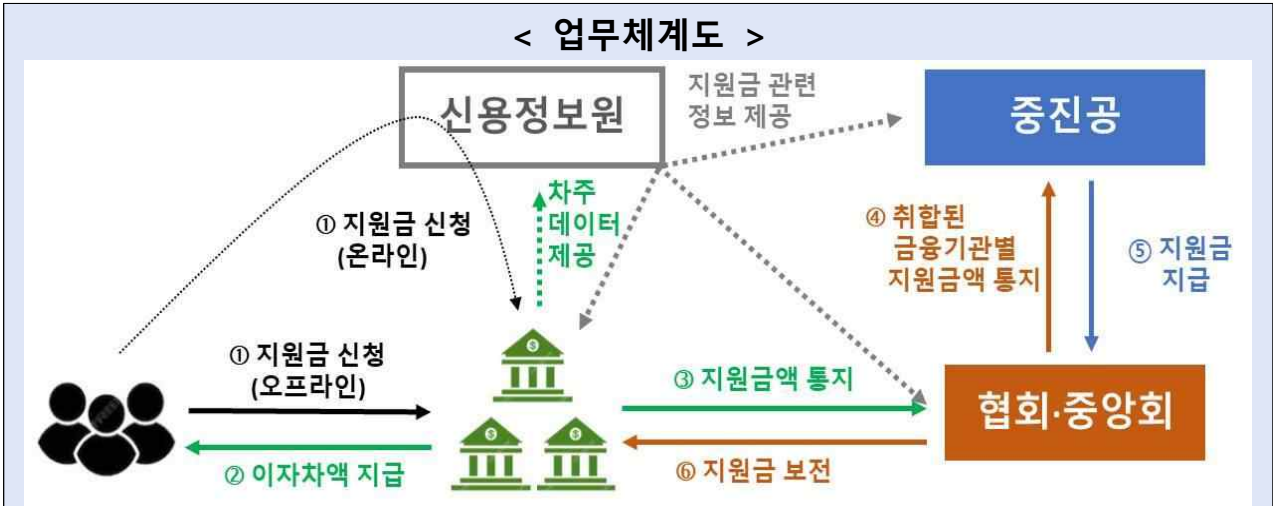
2. 신청정보 현황

신청인명	신청일자	신청인 연락처	주사업장 소재지	신청접수 금융기관	신청인과 사업자의관계
홍길동	2023.3.23	010-1234-5678	서울(002)	온라인(신정원)	본인

신청정보 입력하러 가기
신청정보 입력하러 가기
신청정보 정정/삭제
신청정보 정정/삭제

👁 화면의 주요 항목 설명

- △ **실제지급액**: 실제 차주에 지급된 후 나타나는 금액 (미지급 상태에서는 “0원”)
- △ **예상지급액**: 1년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후 나타나는 금액 (미납입 상태에서는 “0원”)
- △ **대출정보 및 지급정보**
 - ▶ 점포코드: 이자환급 대상 대출잔액이 있는 점포명
 - ▶ 계좌번호
 - ▶ 대출정보: i)금리, ii)대출잔액, iii)이자1년 납입여부(1개 점포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화면 상단의 지급예상액은 “0원”으로 나타남)



※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주의 대출 관련 정보(대출잔액, 금리, 이자 지급액 등)로 개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관계기관과 공유

① 차주의 신청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거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류 제출			우편, 이메일 등	

② 금융기관의 신청 접수: 차주로부터 첨부한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접수한 신청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③ 금융기관은 분기말에 이자환급액 지급

④ 금융기관은 이자환급액 지급 시, 지급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

⑤ 금융기관은 분기 지급액이 확정되면 관련 협회·중앙회에 정산 요청

⑥ 협회·중앙회는 중진공에 정산 요청

⑦ 중진공은 정산내역 확인 후 협회·중앙회에 해당 금액을 지급

⑧ 협회·중앙회는 금융기관에 이자환급액을 보전

※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산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완료

붙임4

예상 질의사항 및 답변

1.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치 이상 납입된 계좌는 먼저 환급받을 수 있는지?

-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이 1억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액이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 가능
- 예컨대, 3개 계좌에 각각 대출금이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인 경우, 합산하여 1억 5천만원이므로 1억원 상한에 따라 5천만원은 환급대상이 아닌 만큼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 가능함

* 적색: 1억원 한도에 따라 감소된 대출금액

	A계좌: 3천만원 (금리 6.5%)	B계좌: 5천만원 (금리 6%)	C계좌: 7천만원 (금리 5.5%)	환급대상 계좌
경우 1	3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A, B, C
경우 2	3천만원	-	7천만원	A, C
경우 3	-	3천만원	7천만원	B, C
경우 4	-	5천만원	5천만원	B, C

-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계획임
- 최대 지급금액은 지원대상 계좌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계좌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차주에 불이익*이 우려됨

* 예: 경우 1에서, 1년치 이자납입이 완료된 B계좌와 C계좌를 우선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금리가 높은 A계좌가 제외됨에 따라 환급금이 감소

- 그러므로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환급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게 차주에게 유리함

※ 중소기업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 ('23.12.31일 기준)

2. 신청을 했으나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우선 본인이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를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아래 그림 붉은색 표시한 부분) 및 신청 금융기관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 지급정보 조회 화면

1. 대출정보 및 지급정보

참조코드	계좌번호	대출정보			지급정보		
		금리	대출잔액	이자1년 납입여부	예상지급액	실제지급액	지급일자
현대캐피탈	000000-000000	6.5%	50,000,000	중지	750,000	750,000	2024.3.28
현대캐피탈	000000-000000	6%	30,000,000	중지	300,000	300,000	2024.3.28
농협	000000-000000	5.5%	40,000,000	중지	100,000	100,000	2024.3.28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 (1811-8055)에 연락하면 됨

3.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데, 이 경우 어느 금융기관에 가야 하는지?

-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들 중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 하여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